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6837호

**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

2018년 3월 22일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” 을 “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” 으로 한다.  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「건축법」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(空地: 공터)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(公衆)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1. 개정이유

가.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호텔업자에서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이용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80일 이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

나.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제6조제3항 신설)